#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6 발의연월일: 2025. 5. 13.

발 의 자:김용민·김우영·김병주

민형배 • 노종면 • 이성윤

이재강 · 서영교 · 정진욱

장철민 • 박민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관의 좌석은 원고·피고·피고인 등의 좌석에 비하여 물리 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음.

이러한 배치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법시스템의 잔재로 지적되어 왔음. 최근 법대의 높이를 다소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법관이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어 당사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법정은 국민이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임. 법관은 국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민주주의의 일원으로 존재해야 함.

이에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56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법정의 구조 원칙) ① 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적·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공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법 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일한 높이로 동 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6조의2(법정의 구조 원칙) ①
	법정은 평등한 구조로 설계되
	어야 하며, 시각적 • 물리적 접
	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공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
	에서 법관, 당사자, 변호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의 좌석은 동
	일한 높이로 동등한 지위를 가
	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
	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